

법과 간호

김화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목 차

- I. 서언
 - 1. 법의 개념
 - 2. 법의 체계
 - 3. 법의 효력
 - 4. 법의 적용과 해석
 - 5.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이해
- II. 결언

I. 서언

인간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는 단순한 사람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인간간에 여러가지 변수에 의하여 서로 복잡하게 얹혀 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 발전하게 되어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바로 이 규칙이 도덕과 법이며 법은 국가의 공권에 의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강제성을 갖게 된다.

법은 행위의 외면성,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에 관한 것으로 토마지우스(Thomasius, 1655~1728)는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내면적 평화를 주는 것이고, 법은 타인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은 타인과의 관계로 형성된 공동생활에 사회의 윤리성과 강제성을 지니며 그 사회에서 준용되는 법의 규범(norm)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간호사는 하나의 간호사회(Nursing Society)를 이루고 이 사회는 보건의료사회(Health Care

Society)의 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발전에 꽤 빨리 참여해온다. 여기에 간호에 관련된 도덕(윤리)과 법이 복잡한 간호사회 더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사회 현상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간호사회에서 법의 규범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 보건의료사회, 간호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 또는 법체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하여 간호사의 현재 혹은 미래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해를 얻고 정당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적 반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원고는 법의 개념, 법의 체계, 법의 효력, 법의 적용과 해석, 행정법의 이해 등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를 위한 법적 이해를 돋구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雷種庫의 「法學通論」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하였다.

1. 법의 개념

“아직도 법률가는 그들의 법의 개념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고 칸트(I. Kant)는 말했다. 이처럼 법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답하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규범인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며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사회규범을 인위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다.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즉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시키기 위하여 강제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갖고 있는 규범이며,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법은 정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정의라는 가치(법이념)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분야개념이다. 이는 실제로 현실과 가치의 어느 한 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존재와 당위의 연결에서 나오는 규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법은 존재로서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며, 거기에만 접착하지 않고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인 규법이라는 점이다.

‘법’과 관련하여 비슷한 용어들이 있다.

‘현법’은 우리나라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 제정한 성문현법이다. 그러한 의미의 현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이 아니고, 국가의 최고법규라면 그의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실질적인 헌법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되고 지금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형식적인 헌법이다. ‘법률’이라는 말에도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의는 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법을 가리킨다.

‘법’은 보다 포괄적, 추상적이며, ‘법률’은 구체적, 가시적이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 넓은 뜻으로는 법률이나 법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행정관청이 제정하는데, 그러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에서 협의의 법률과 다르지만 국가의 법령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는 없다. 그리고 양자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규’는 넓게는 법규범 일반의 준말이고, 좁게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한다. ‘자치법규’는 인정된 자치권의 법위안에서 그 자치권에 의해 자기의 조직, 자기의 사무 및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다.

‘법전’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실정법을 체계적으로 편별한 조직적 성문법규집의 전체를 가리킨다. 법전을 법령집이라 부를 때도 있다.

2. 법의 체계

법은 시대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기초하여 제정되지만 그 내면에서는 모순과 대립되는 요소를 간직하면서도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법은 일관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법의 체계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문제, 국내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의 구별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국내법은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와 국민 또는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인데 반해, 국제법(international law)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와 국제기구에 관한 법을 가리킨다. 다만 국제법에는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이 있는데 국제사법을 적용하느냐 그 외국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느냐를 정하는 법이 대부분이므로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속한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내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이분체계는 일찌기 로마법에서 구별하여 체계화되어왔다. 그렇지만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이냐를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즉 법이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익설이 있고, 법률관계의 주체를 표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고 하는 주체설, 법률관계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고 하는 법률관계설과 인간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전자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하고, 후자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는 생활관계설이 있다.

그 중에서 생활관계설이 오늘날의 통설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법은 국가권력이 직접 지배하고 규제하는 공적, 정치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며, 사법은 국가권력이 일단 후퇴하고 간접적인 지배체계하에서 어느 정도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용인하는 사적, 경제적 또는 가족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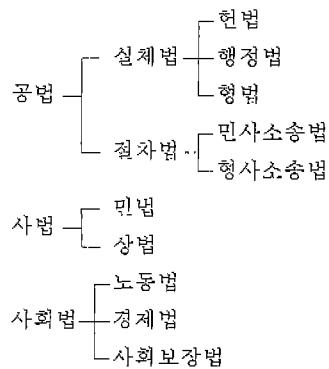
이렇게 공·사법의 구별이 크게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 19세기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적경제 체제 아래서였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사법제도에서도 남아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사법재판소와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재판소가 있어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이외의 다른 행정사건을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원들의 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행정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며 모든 법을 상의 쟁송은 종국적으로 사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처럼 공·사법의 구별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로는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영미법계처럼 행정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사건도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사건의 법위는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조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에 관한

소송만이 행정소송사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대로 갈수록 국가가 복지국가를 이념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를 조절하며 ‘소유와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 독점기업의 횡포를 억제하려고 애쓰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법은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분리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사회법이란 개념도 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속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법의 체계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체계화 해볼 수 있는 것이다(국내법).



보건·의료관계법은 대부분 사회법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부분적으로 공법, 사법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법의 체계 속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간호에 관련된 법은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3. 법의 효력

법의 효력에는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실질적 효력은 법이 현실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으로 이는 규범이 실현하려는 이념과 현재 사실로서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의 문제이며, 형식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이 시간적, 공간적, 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의 효력이란 말과 관련하여 법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쓰기도 하는데,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의미하고,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고 있는 하나의 규범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 것이 구속성을 갖는다는 것, 즉 사람은 규범이 정한 방법대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효력을 가지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실정법은 구체적 사설에 적용된다. 적용되는 사설이 어떤 시기에 발생하였는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 또 어떤 사람에 의하여 발생되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을 법의 시(時)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이라고 한다.

우선 법의 시(時)에 관한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53조 7항).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법의 주지기간이라하고, 제정법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유효기간의 종료로 법령은 당연히 폐지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신법은 구법을 깨뜨려 구법은 묵시적으로 당연히 폐지된 것으로 본다.

법의 장소에 관한 효력은 지방자치제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은 그 목적상 그 지방에 한하여 적용되며, 도시계획법은 도시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법의 사람에 관한 효력은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소 및 시에 관한 효력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사람에 관한 효력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국내법상의 예외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84조). 국회의원은 불체포의 특권이 있고(헌법 제44조), 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빌

언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또는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의료법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고, 국제법상의 예외는 주재하는 군대, 외국 영해상의 군함의 승무원 등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는 국제법상 현재 체류하는 나라의 관세권,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이 있다.

4. 법의 적용과 해석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표시된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거기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3단논법(Syllogism)의 형식을 맟아서 법이 적용된다.

가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A가 B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판결로써 A를 3년 징역에 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관은 한편에서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또 한편에서 법을 찾아내어 해석한 법을 사실에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의 확정과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을 통하여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법의 해석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이란 관정이 유권적으로 내리는 해석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학리해석인데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해석 특히 법학자가 학설로서 전개한 법해석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하등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권력으로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 전지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일반 여론에 대한 설득력도 그만큼 강하며 유권해석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가

지고 있다. 즉 학자의 법해석이 재판과 입법의 기초가 된다. 종래의 법학은 이런 종류의 해석에 주력을 기울여 왔으며, 학리해석은 법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러한 학리해석에는 법구의 문자 및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 문장의 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여 해석하는 문리해석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관심을 두는 논리해석이 있다.

또한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과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이란 이 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으로 ‘해석규정’을 두어서 해석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란 용어는 ‘본법에서 물건이라함은 휴체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와 같이 용어를 한정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학설과 판례가 형성된다.

사법해석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형사절차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민사절차에는 원고의 제소가 있는 후에 구체적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리는 해석으로, 법원은 오직 판결의 형식으로만 법을 해석하여 당사자의 다툼에 답하고 판결전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얻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당해사건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해석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원의 판결에서 표시되는 법해석이 절대부동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법원의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부른다.

행정해석이란 행정관청에서 법을 집행할 때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 지령 등을 내리면서 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물론 최종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릇된 해석에 따른 법집행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으로 교정된다. 그러나 상급관청의 회답 등을 같은 계통의 하급관청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역시 행정해석도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다.

5.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이해

간호사회의 질서를 위한 관세법 중에서 공법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 진다면 간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의 관념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에서는 입법에 속하거나 사법에 속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입법부가 행하느냐 사법부가 행하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입법부의 행위에도 사법부의 행위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조직, 권한 및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행정주체와 개인인 행정객체 사이에 생기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서는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규제, 개별행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즉 행정법의 법규법으로 형성되는 형식과 절차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입법적 공권력기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성문법규법을 비롯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관습규법과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례 등과 같은 불문법 규범을 들 수 있다.

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을 말한다. 행정조직의 넓은 뜻의 개념은 행정주체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설치, 직무범위, 구성, 상호관계 등에 관한 것과 함께,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일체의 인적요

소(공무원), 물적요소(공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조직,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조직행정이라고 한다. 조직행정은 행정객체인 국민을 향하여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을 그 주체에 의해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행정, 자치행정, 외임행정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의 행정을 행하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 하며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최고의 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의 통할에 따라 각종의 행정을 분장시키는 것이 국가행정이다. 그리고 그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한 규정의 총체를 국가행정조직법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은 그 법률상의 지위, 권한, 사무의 종류 등을 표준으로 하여 구분하는데, 그 종국가의 의사자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관청이라고 한다. 행정관청은 그 권한과 사무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단일인에게 있는 단독제관청과 의사결정권이 여러사람의 합의체에 있는 학의제관청이 있다. 둘째, 그 관할구역이 전국적이거나 지방적이거나에 따라서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이 있다. 예컨대 행정각부장관은 중앙관청이고, 각 도지사는 지방관청이다.

다. 행정작용

행정작용에는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행위(행정처분)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에 사회생활관계를 행정법적 으로 평가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법적 평가를 해보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된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형태가 행정행위(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행정행위의 관념은 일반 민법상 법률행위의 관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문상 다루고 있다. 여기서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범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는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이며, ② 법적 행위이고, ③ 공법행위이며, ④ 구체적 법집행행위이고, ⑤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라. 행정구제

행정법의 고유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우리나라 행정구제 제도는 첫째,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물질적으로 적절 구제하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둘째는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양자의 행정구제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행정상 손해전보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위법한가 적법한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행정객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행정주체가 전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원칙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가지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행정청 자신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를 도모함과 아울러, 행정의 자율적 반성과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공정, 독립의 법원에 의한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그 판단의 범위, 절차 등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게 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이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그 분쟁해결

기관과 절차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비교해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보다 더욱 공정성과 신중성이 보장되고 있다. 공정성은 재판기관이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기관에서 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중성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장되고 있다.

마. 개별행정

부문별 개별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을 목적에 의해 분류한 행정을 말한다. 따라서 부문별 개별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의 내용은 결국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를 좀더 세분해서 하게 되면, 행정의 영역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경찰행정, 교육행정, 재무행정, 조세행정, 경제행정, 교통행정, 상공행정, 농림수산행정, 보사행정, 체육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II 결 언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 행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규칙이 바로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간호행위는 계속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행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간행위의 변화에 걸맞는 간호행위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용납이 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호행위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간호사는 법의 개념, 법의 체계, 법의 효력,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간호에 관련된 법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